

학생회 회칙

제정 1979.03.01.
개정 1996.02.26.
개정 1998.02.02.
개정 1999.02.15.
개정 2000.08.08.
개정 2001.06.15.
개정 2006.1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3.09.12.
개정 2014.11.0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위치) 본회는 순천제일대학교 학생회라 칭하고(이하 “본회“라 한다) 본부는 순천제일대학교 안에 둔다.

제2조(조직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본 대학 건학 정신에 입각한 학생 자치 활동의 실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제5조(금지활동) ①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 회원은 대학 운영에 관여 할 수 없으며 불법적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등으로 학사 행정업무 및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조(효력기능) 본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 된다.

제7조(활동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술 연구 활동
-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 ④ 기타 정서, 교양, 친목, 복지등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제2장 학생회

제8조(임원정원 및 임기 제한)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별표1) 두며 임기는 회계 년도에 따른다.

- ① 학생회
 1. 학생회장 1인(주간)
 2. 부학생회장 2인(주간 1인, 야간 1인)
 3. 각국장 및 부서별 1인
- ② 임기중 학생회 정·부회장을 제외한 각 국장, 부장이 학칙을 위반,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시 또는 간부승인 규정 제2조를 위반 하였을 시는 재선임 하여야 한다.
- ③ 임기중 학생회 정회장이 유기정학 및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피선거권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었을 시 기타 이유로 유고시 주간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대행자가 없을 시 선거규정에 의하여 재선출 한다.
- ④ 학생회 임기는 당해 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직무선출)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장 :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 ② 부학생 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야간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다.
- ③ 선출임명 :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국장 및 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해당과 학과장, 지도교수 제청에 의거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편성부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항, 각호의 국과 부를두며 관장사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학생회
 1. 정책국
 - 1) 기획부 : 본 회의 제반 기획에 관한 사항
 - 2) 홍보부 : 본 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 3) 조직부 : 본 회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 1) 총무부 : 본 회의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 2) 관리부 : 본 회의 제반업무 및 행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회계부 : 학생회비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복지국
 - 1) 대외협력부 : 본 회의 대내외적 협력에 관한 사항
 - 2) 취업정보부 : 본 회 회원의 취업 정보에 관한 업무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4) 여학생부 : 여학생 친목에 관한 사항

제3장 대의원회

- 제11조(구성의장)** ① 대의원회는 각 학부(과) 2학년 학회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의원중에서 호선한다. 단 집행위원은 대의원회에 발언권은 있되 표결권은 없으며,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1학년 대표가 참여한다.
- ②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대의원 의장의 자격은 학생회장의 자격요건에 준한다.

제12조(업무기능)

- ① 학생회의 예·결산 심의 및 감사 기능
- ② 사업계획 심의 기능
- ③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
- ④ 정·부 학생회장 선거규정에 의한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간접선거권

제13조(소집의견) 대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결은 다음에 의한다.

- ① 정기총회 : 매학기 초
- ② 임시총회 : 의장이 필요하다도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장 집행위원회

제14조(구성의장 및 업무기능)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은 집행위원회로서 각 국장 및 부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④ 회칙개정 및 수정 발의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중요한 의안에 관한 사항
- ⑥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집행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의장) 집행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① 정기회의 : 월 1회
- ② 임시회의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장 재정관리

제16조(회비경리)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이 충당 경리 한다.

- ①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회비는 매년 대의원회에서 금액을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생회장이 회원의 자율납부에 의해 징수한다.
- ③ 회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생지도위원회와 협의하여 경리한다.
- ④ 학생회비는 학생회장이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편성 및 배분) 본 회의 예산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하며 학생회에 소속된 기구에도 필요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 ① 예산안 편성 -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00일 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한다.
- ② 예산안 통과 - 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 ③ 예산 가집행 - 예산안의 소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회장은 지도위원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④ 추인 - 예산을 수립 의결 통과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추산 -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예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결산심의)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회계감사) 본 회의는 대의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계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학생지도위원회

제21조(구성운영) 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지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① 구성: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되며, 지도위원은 대학본부 각 보직 처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학사지원팀 직원1명을 간사로 둔다.(학생 상벌 위원회도 이와 같다.)
- ② 운영: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심의기능) 학생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추인)한다.

- ①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조직, 편제, 임원에 관한 사항
- ③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④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⑤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⑥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제23조(학생회 활동의 사전승인) 학생회(동아리활동 포함) 및 학생단체에서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집회 허가원을 5일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① 교내, 외 10인 이상의 모임 활동
- ②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 ③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④ 교내 시설물의 사용
- ⑤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 확성기사용

제24조(동아리활동) 동아리협의회 및 각종동아리는 별도의 동아리 활동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5조(행사승인) ① 행사계획 승인 신청은 행사 10일전 사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② 행사승인 신청에는 행사의 목적, 일시, 장소, 예산, 참가인원등을 명시하여야한다.
 ③ 학사운영처장은 행사 승인신청서가 허위로 기재 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학생회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게시물)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사운영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엄수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시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한다.
 ③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모조1/2절지 이하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사운영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크기를 바꿀 수 있다.

제27조(간행물)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없다.
 ② 총장은 전항의 발행 승인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발간물 편집에 관한 일체의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간물에는 지도교수를 명기하여야한다.

제28조(대의 행사 참가) ① 우리 대학 학생으로서 교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사운영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행사 참가 후 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학사운영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① 학생회 및 대의원회에서 개정 발의가 있을때
 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③ 1호에 의해 발의 할시에는 대의원 및 집행위원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④ 2호에 의해 개정할시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생회칙 및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0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생회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급 제대장과 부서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등 임원으로 보며 학도 호국단 재산은 학생회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 회칙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회의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199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0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규정은 2001년 6 월1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회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회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규정은 201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회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